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발간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법제도 준수사항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발주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와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법제도 준수 사항과 발주기관의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배포하오니,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용 안내 >

발주기관 선택적용 (* '기울임' 글자체 적용)

- 발주기관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내용 표기
* 예) Case-1, Case-2 중 선택 적용
- 작성시 적용해야 할 문구는 **파란색** 표기

< 0000000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SW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Case-2) SW와 다른사업이 혼재된 사업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작성방법(Tip)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 내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무상유지보수(원인)' 명시하거나 유지보수 사항을 하자보수의 범위로 명시하지 않도록 제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연구 관련영역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	-------------------

작성방법(Tip) (* '기울임' 글자체 적용)

- 작성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기술
- '참조' 표시는 해당되는 SW사업 법·제도 항목명 표시

※ '기울임' 글자체로 적용된 부문 모두 삭제 후 적용

< 참조표 >

법제도 개선권고 주요항목	페이지 구분(부록 페이지)		
	IV. 제안요청내용	V. 제안안내사항	VII. 별첨 / VIII. 서식
1. 과업심의위원회		p.27	p.44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pp.14 ~ 15	pp.27 ~ 28	p.39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pp.19 ~ 21	
4. 하도급 제도		pp.28 ~ 30	pp.45~47 하도급계획서 등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pp.30 ~ 31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pp.31 ~ 32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p.32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pp.32 ~ 33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특정규격 표시 삭제 필요	pp.33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p.22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p.23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pp.23 ~ 26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p.34	
14. 요구사항 상세화	pp.12 ~ P15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p.35	p.40 SW 개발 사업의 적정 기간 종합산정서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투입인력 요구 사항 삭제 필요	p.35	
17. SW사업 영향평가		p.36	p.4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18. SW사업정보 제출		pp.36 ~ 37	

※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P42)

동 제안요청서는 예시이며 기관의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시스템 구축 용역
주관기관	

20##. . .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목 차

I . 사업개요	#
II . 시스템 현황	#
III . 사업추진 방안	#
IV . 제안요청내용	#
V . 제안서 작성요령	#
VI . 제안안내 사항	#
VII . 서식	#
VIII . 별첨	#

I .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
- 사업금액: ○○○○ 원 (VAT 포함)
- 사업기간: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까지

♣ 작성 방법 (Tip)
- 해당 사업의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을 기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작성 방법 (Tip)
-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경위를 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 행정업무 효율증대, 대민 서비스 개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제안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기술)

3. 서비스 내용

♣ 작성방법(Tip)

- 사업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업무처리 절차) 개선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IV. 제안요청내용' 참조

♣ 작성방법(Tip)

- 본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간략히 기술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 작성방법(Tip)

- 발주 기관이 개선 또는 연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의 개요 작성
- ※ 일부 보안 등의 이슈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은 제외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 분	품 목	규격/모델	수량
HW	웹서버	0000000000	1
	WAS서버	0000000000	1
	DB서버	0000000000	1
	HBA 카드	0000000000	3
	Rack	0000000000	1
	콘솔	0000000000	1
	스토리지	0000000000	1
	L4 Switch	0000000000	1
	L3 Switch	0000000000	1
	SAN Switch	0000000000	2
소 계			13
SW	웹서버	0000000000	1
	WAS서버	0000000000	1
	SSO Server/Agent	0000000000	1
	검색엔진	0000000000	1
	DB 암호화	0000000000	1
소 계			5
총 계			18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
-

현행 시스템 구성도 삽입

♣ **작성 방법 (Tip)**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및 구성도 작성
(최종 사용자, 통신망, 대형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을 도식화하고, 정보화 현황 내용을 기술)
-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및 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토록 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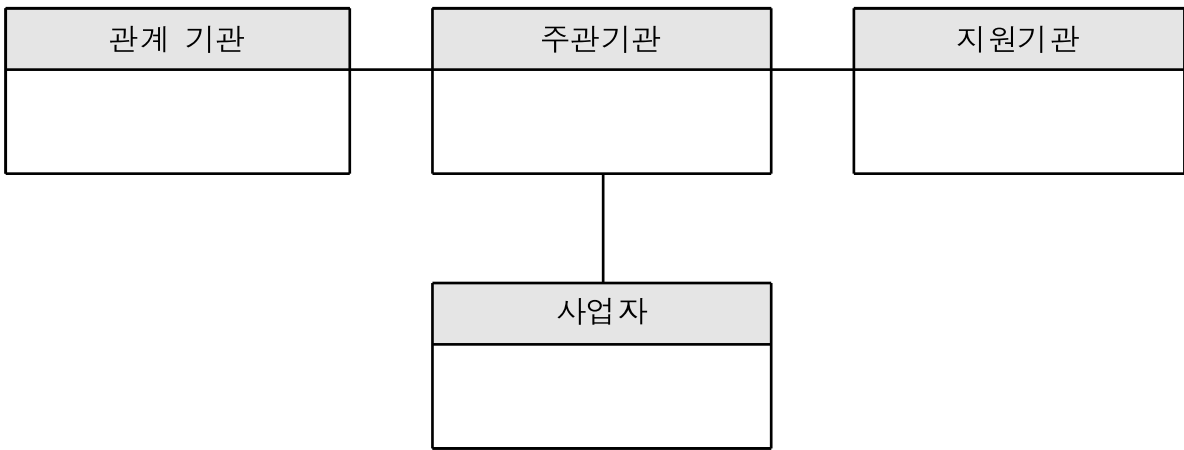
1. 추진목표

-
-

♣ 작성방법(Tip)
-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요 추진 목표를 기술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 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지원기관		
관계기관		
사업자		

♣ 작성방법(Tip)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담당업무 등을 기술

3. 추진일정

-
-
-

구분	20XX년				
	M 월	M+1 월	M+2 월	M+3 월	...
■					
-					
-					
-					
-					

♣ 작성 방법 (Tip)
 - 본 사업의 주요 일정을 월별로 제시

4. 추진방안

-
-
-

♣ 작성 방법 (Tip)
 - 본 사업의 추가 안내 필요한 추진방안 기술

IV.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
-

♣ 작성방법(Tip)

- 제안요청 업무 범위 및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 간략하게 기술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목표 시스템 이미지 삽입

♣ 작성방법(Tip)

- 목표 시스템의 목표 이미지 삽입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SFR-002		
	..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PER-002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ECR-00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INR-002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AR-002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TER-002		
	...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SER-002		
	...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QUR-002		
	...		
제약사항 (COR)	COR-001		
	COR-00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PMR-002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PSR-002		
	...		
...			
합계			

4.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FUN)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 -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작성 예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나라 지식 기능 고도화 (포털)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기능 고도화	(필수)
	세부내용	○ 포털의 다양한 포틀릿 기능 제공 - 지식관리자가 수집한 지식을 메인 화면에 표출하는 포틀릿 제공 - 아이콘 및 미니배너 나열식 SSO링크 포틀릿 제공 - ... ○ 온-나라 지식광장 기능 고도화 (필수) - 온-나라 지식 지식광장 검색일 제약을 유형맵별로 설정하는 기능 제공 (현재 전체 30일 제약됨). 필요시, 성능 최적화를 위해 기존 테이블을 각 유형별 테이블로 분리 - 개인별/부서별/기관 별 지식 이용현황 그래프 제공 -	
산출 정보			(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시)
요구사항 출처			

♣ 작성 방법 (Tip)

- 사업수행시 추진해야 할 요구사항을 명확히 도출하여 명시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정보센터>SW제도자료실)에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 참조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4. 요구사항 상세화

②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000 도입		
		구분	규격	수량
<p>※ 도입하고자 하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및 모델 등 불공정 스펙명시 불가</p> <p><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p> <p>-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u>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u> 공지함(별첨 1 참조)</p> <p>※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p> <p>< SW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여부에 따른 발주기관 선택 적용></p> <hr/> <p>Case-1) BMT 실시 사업</p> <p>○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함</p> <p>※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부터 동일한 SW에 대해 기존에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음</p> <p>-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며,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p> <p>-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00%,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 00%로 구성</p> <p>Case-2) BMT 미실시 사업</p> <p>○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평가시험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시험을 미실시 함</p>				
품목	실시 여부	평가시험 미실시 사유	평가시험기관 검토의견	
00	미실시	000000	000000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작성 방법 (Tip)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2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을 첨부(별첨1 참조)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사업의 경우 평가시험 실시여부 명시
- 도입품목 및 규격 작성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명시 금지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③ OOOOO 요구사항

♣ 작성 방법 (Tip)

- ①, ② 요구사항 외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

* 예) 성능, 인터페이스, 보안 등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 방법(Tip)

-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따라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 작성 방법(Tip)

-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따라 제안서 작성 목차 가이드 작성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 작성방법(Tip)

-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따라 제안서 세부 작성 가이드 작성

VI.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000 입찰방식

○

♣ 작성 방법 (Tip)

- 본 사업의 입찰방식(예)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을 기술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②

< 기관 유형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국가기관의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Case-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사업금액등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Case-2)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Case-3)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가능

Case-4) 사업금액 80억원 이상인 사업

-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 80억원'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Case-5) 사업 금액 80억원 이상인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Case-6)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 본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Case-7)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Case-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Case-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분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00분의20이내 참여 허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제5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분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작성방법(Tip)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을 명시
- 총 사업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하여 기술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낙찰자 선정방식 : 00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협상에 의한 계약 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Case-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시

○ **계약방법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44조2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작성 방법 (Tip)**

- 사업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입찰 시 유의사항**

○

♣ **작성 방법 (Tip)**

- 입찰 시 유의사항 작성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차등점수제 적용여부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Case-2)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15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대응책의 타당성	#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 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 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실성 	#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상생협력 (5점)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	#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
총 계				#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평가부문별 점수 = $\sum_{k=1}^n$ 평가항목배점_k × (평가항목의 취득등급_k / 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_k)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 50% 미만	4등급
40% 이상 ~ 45% 미만	3등급
35% 이상 ~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 · 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 · SPICE 2~3	미부여
비율(%)	100	50	0

♣ 작성 방법(Tip)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고시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 SW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를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1. 기술능력평가비중(90%)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작성 방법 (Tip)

-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 과업심의위원회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별첨 1 참조)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 SW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여부에 따른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BMT 실시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함

※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부터 동일한 SW에 대해 기존에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며,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00%,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 00%로 구성

Case-2) BMT 미실시 사업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평가시험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시험을 미실시 함

품목	실시 여부	평가시험 미실시 사유	평가시험기관 검토의견
00	미실시	000000	000000

♣ 작성방법 (Tip)

- 'IV. 제안요청서 내용>4. 상세 요구사항'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 기재 불필요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2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을 첨부(별첨1 참조)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사업의 경우 평가시험 실시여부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제한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하도급 허용 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2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Case-2) 하도급 불허 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작성방법(Tip)

- 하도급을 허용, 불허용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
- 하도급은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함을 명시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및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
-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토록 요구할 수 있음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4. 하도급 제도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방법(Tip)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 등의 상호협의 결정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 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에 계상 여부를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공급자가 요구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함을 기재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작성 방법(Tip)

- 계약당사자 간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을 명시
 -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절차, 산출물 활용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개발SW의 공동활용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개발SW의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Case-2) 개발SW의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을 위한 목적으로 ○○○,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 작성 방법(Tip)

-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여부 및 공동활용 대상기관 범위를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지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사업범위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SW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Case-2) SW와 다른사업이 혼재된 사업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작성 방법 (Tip)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 내의 책임을 부여함을 명시
-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사항은 하자보수의 범위로 명시하지 않도록 제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통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통찰에 부치는 경우와 통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작성 방법 (Tip)

-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납품 거부하거나,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불가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실시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제안서 보상 실시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며,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Case-2) 제안서 보상 미실시 명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작성방법 (Tip)

- 총 사업예산이 20억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를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2 참조)

♣ 작성 방법 (Tip)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별첨2 참조)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여부에 따라 선택 적용 >

Case-1)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사업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Case-2)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 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작성 방법 (Tip)

-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투입인력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 명시 불가능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6.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SW사업 영향평가

< SW사업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 선택 적용 >

Case-1) 적용대상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3 참조)

Case-2) 적용 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작성 방법 (Tip)

- SW사업 영향평가(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별첨3 참조)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7. SW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작성 방법 (Tip)

-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개선권고 관련항목

18. SW사업정보 제출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같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VII. 별첨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작성방법(Tip)

- 본 사업에 소프트웨어 구매가 포함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첨부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제 외 ()		
2			직접구매 () 제 외 ()		
3			직접구매 () 제 외 ()		
4			직접구매 () 제 외 ()		
5			직접구매 () 제 외 ()		
6			직접구매 () 제 외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작성방법 (Tip)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양식을 활용하여 스캔본 첨부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 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p>「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원장 _____(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첨 4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작성방법 (Tip)

-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동 양식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법·제도 항목을 자가 점검하여 작성 후, 제안요청서에 첨부

* 미적용 : 적용해야 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해당없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명	
작성일	2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VIII.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요청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 영향평가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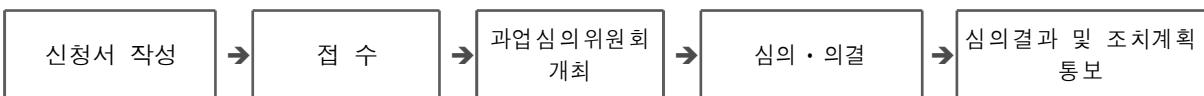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 작성방법 (Tip)

- 본 사업에 하도급 허용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p>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p> $\text{하도급금액비율} = \frac{\text{하도급예정액}}{(\text{입찰금액} - \text{단순물품구매예정액}^*)} \times 100$ <p>*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p> <p>-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p> <p>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_____</p>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p><input type="radio"/>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p> <p><input type="radio"/>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p>				
<input type="checkbox"/>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p><input type="radi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p> <p>-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p> <p>-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p> <p><input type="radi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p> <p>-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p> <p>-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p>				
<p>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수급체 대표 상호:</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서명 또는 인)</p>				
발주기관의 장 귀하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작성방법 (Tip)

- 본 사업에 하도급 허용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 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